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461
------	------

2026.03.1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02월 09일, 아이수루 의원(찬성자 19명)

2. 회부일자 : 2026년 02월 12일

3.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5.03.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아이수루 의원)

1. 제안이유

-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일자리 차원에서 경력단절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등에도 중요한 바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됨
- 특히, 여성에 대한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바이오·의료기술 등이 접목된 여성기술혁신(Femtech) 산업 또한

급성장하고 있음.

- 하지만, 인구가 밀집한 서울의 경우 여성과학혁신 산업에 자리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체계 등이 실질적으로 부족하여, 산업 성장에도 한계가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다.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안 제5조).
- 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마.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바.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 사. 해외인재 유치 및 정주여건 지원(안 제12조).
- 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 자. 취업·재취업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 차. 지역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 카. 업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 타. 표창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됨.

2.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조례안의 입법배경

- 과학기술 분야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으로서 우수 인적자원의 확보와 활용은 첨단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음.
- 특히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인력의 다양성과 전문성은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며, 인적자원의 성별 다양성 또한 혁신역량과 직결되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음.
- 한편 최근 AI·바이오 등 첨단기술로 여성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여성 기술혁신(Femtech) 산업¹⁾이 성장하고 있는 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과학기술인 비율이 23.7%로 OECD 30개국 중

1) 바이오·AI 등의 첨단기술과 결합해 여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여성 특화 산업으로 높은 성장률뿐만 아니라 난임 등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효과로도 주목받고 있는 유망 분야임 [오보연(2025), “여성 특화 산업인 펌테크 분야 지원 신설하고 여성 전용 모태펀드에 매년 100억 원 출자”, 한국개발연구원(2025), 「나라경제」, 2025년 12월호: 46~47.] .

29위 수준이며, 과학기술계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7.5%로 OECD 32개국 중 31위 수준에 불과함.2)

<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 관리자 비율 >

구분	여성과학기술인 비율(2023년)	여성 관리자 비율(2024년)
한국	23.7%	17.5%
OECD 평균	36.3%	35.6%

출처: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2026), 「통계를 이용한 2026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글로벌 현황 진단」.

- 이에 정부는 2002년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5년 단위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복귀 지원, 경력단절 예방, 일·가정 양립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 >



2)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2026), 「통계를 이용한 2026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글로벌 현황 진단」.

- 그 결과 최근 5년간(2019~2023년)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이 약 2.7% 증가하는 등 점진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체계적인 지원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여성과학기술인 비율 추이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1.0%	21.4%	22.2%	23.0%	23.7%

출처: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2026), 「통계를 이용한 2026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글로벌 현황 진단」.

- 한편 서울시는 여성가족실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경력단절 예방,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목표로 다양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실에서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일부 사업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영역이 존재함.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2026년 1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총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AI시대 여성 기술 인재 성장 지원, 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 과학기술 분야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경제실은 ‘서울 RISE’ 사업을 통한 AI 및 이공계 분야 인재양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에는 ‘서울시 이공계·첨단산업 인재양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부터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여성정책 또는 일반 이공계 인재양성정책의 범주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어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육성 전략의 수립, 지원계획의 체계화,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이고 제도화된 정책 체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첨단산업 중심 도시인 서울의 산업구조와 인력 수요를 고려할 때,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경력관리를 포괄하는 서울시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부재할 경우 산업 수요와 인재 육성 정책 간 연계 미흡으로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제약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 기반을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산업 수요와 연계한 인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동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다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은 여성정책과 산업·인재양성 정책이 결합되는 영역에 해당하는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실과 여성가족실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협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관련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	제정일
광주	광주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0.01.15.
부산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1.07.13.
경북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3.09.16.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12.31.
충남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8.17.
경남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5.06.
전남	전라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5.03.06.
경기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6.01.07.

3. 조례안의 세부 내용

가. 조문 구성 체계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안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원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이공계 여학생 및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취업·재취업 지원, 지역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 면에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대체적으로 준수하고 있음.

나. 여성과학기술인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의를 동 조례안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이학(理學)·공학(이하“이공계”라 한다) 분야의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육성 및 지원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 안 제5조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과학기술인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안 제6조는 「여성과학기술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간 체계적인 정책 추진 구조를 마련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안 제5조 및 제6조는 상위법에 따른 국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서울시 차원의 정책 방향과 연차별 실행 과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 실태조사(안 제7조)

- 안 제7조는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지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육성 및 지원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는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근거를 확보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개발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법」 제6조에 근거하여 매년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바,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내용 등이 정부 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의 범위,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안 제8조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공계 여학생 및 여성과학기술인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는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장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업무 소관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함.
- 그리고 위원회는 상설로 운영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분야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3)의 위원회

3)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설치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4)은 위원회 설치 시 비상설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회의가 연간 4회 이상 개최될 것이 예상되거나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시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설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동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회의가 정기적으로 연간 4회 이상 개최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상설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8조제5항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의 소관 부서는 경제실이고 여성정책 전반은 여성가족실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 구성의 실효성과 부서 간 역할 분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안 제9조)

- 안 제9조는 「여성과학기술인법」 제9조에 근거하여 이공계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서울시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성과학기술인법」 제9조제2항은 우수한 여학생의 선발 기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구체적인 선발 기준을 규정하면서 지원 금액 및 규모 등 지원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등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의 선발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우수 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여학생 중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을 선발한다.
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여학생(논문을 공동집필한 경우에는 주된 집필자로 한정한다)
2.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관련 학회로부터 상을 받은 여학생
3. 국내외 과학기술논문대회 또는 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우수한 논문 또는 발명 등을 제출하여 상을 받은 여학생
4. 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이공계대학등의 장이 추천한 여학생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학생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지원 규모 등 지원 범위는 재학 중 드는 학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정한다.

- 따라서 안 제9조는 상위법 및 시행령의 체계를 반영하여 서울시가 우수 이공계 여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 진입 단계에서부터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장기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지원 대상을 ‘이공계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여학생’ 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 거주 여부 또는 서울 소재 대학 재학 여부 등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서울시는 집행단계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 또한 ‘우수한 여학생’ 의 선발 기준과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시는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 및 서울시의 장학·인재양성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여성과학기술인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국내외 대학, 공공연구기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교육·훈련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교육이나 훈련·연구 활동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학술교류 및 해외연수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여성과학기술인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2. 대학·연구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3. 퇴직한 여성과학기술인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③ 지원 대상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지원
2. 능력 향상을 위한 경력개발 지원
3. 취업 정보의 제공 등 관련 지식 및 정보 지원
4.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교류 지원

- 동 조항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연구활동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고급 연구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규정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9조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이 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범위가 조문상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는 집행단계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또는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서울에 거주하지 않지만 서울 소재 대학·연구기관, 기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등 그 대상의 유형이 다양할 수 있는 만큼, 정책 목적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아. 취업·재취업 지원(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여성과학기술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과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13조(취업·재취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취업·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 내용,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제16조(교육훈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이하 “교육훈련등”이라 한다)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이나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훈련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한다.
1. 제12조제2항제1호의 여성과학기술인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 ③ 교육훈련등의 과정과 절차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등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따로 정한다.

- 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우수 인적자원의 지속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특히 첨단산업 분야의 숙련 인력 확보 측면에서도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서울시의 기존 여성 일자리 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과 교육훈련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 지역지원센터의 설치(안 제12조)

- 안 제11조는 「여성과학기술인법」 제14조의2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취업·재취업 지원, 경력관리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센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정책 접근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지역지원센터의 설치 형태, 기능 범위, 서울시 산하 기관과의 역할 구분 등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센터 설립 이전에 기존 지원체계와의 차별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관련 지원 사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위원회는 비상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5항).

VI.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461
----------	---------

제안년월일 : 2026년 3월 10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8조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관련 지원사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위원회는 비상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5항).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8조(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② ~ ④ (생략)</p> <p><u>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u></p> <p>⑥ ~ ⑨ (생략)</p>	<p>제8조(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u></p> <p>③ ~ ⑤ (조례안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p> <p><u><삭제></u></p> <p>⑥ ~ ⑨ (조례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지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육성 및 지원계획과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 및 지원계획과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업무 소관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전문가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4.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이공계[이학(理學)·공학(工學)을 말한다] 대학등(「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및 해당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의 선발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공공 연구기관 또는 영 제12조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교육이나 훈련·연구 활동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취업·재취업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7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탁 등)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시장은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